

의안 번호	제3528호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0월 7일 김포시장
- 나. 상 정 일 자 : 2024년 11월 4일
- 다. 의 결 일 자 : 2024년 11월 4일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자원화센터) 처리량을 제외한 잔여량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나. 수탁자 :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수거지역과 거리 및 운반비용, 적정 자원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 다. 위탁방법 : 일반(총액)입찰
- 라. 위탁사무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기기로 배출되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를 통하여 수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자원화센터) 처리량을 제외한 잔여량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업체의 운영 단가, 처리량 산정 적정성 여부 및 적정 자원화 처리 실적 분석 등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추후 예산 절감 및 환경보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참고사항이며 실제 소요 금액은 예산안 작성 단계(예산부서 협의 등)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기에 예산액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될 예산안(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25년 예산 변동 사유 및 연도별 계약 업체 현황

1) 2025년 예산 변동 사유

- 작년 대비 위탁단가 예상금액 1,000원 상승 ('24년 160,000원/톤 → '25년 161,000원/톤)
-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위탁단가 예상금액 반영

※ '24년도 실 처리단가 산출내역

: 154,000원(용역 결과 최종 선정단가)에 낙찰률 적용(87.745%) = 135,200원

2) 연도별 계약 업체 현황

연 도	계약 업체명	계약금액 (원)	처리량 (톤)	지급액 (백만원)	비고
2019년	청솔산업(주)	130,000	9,841.72	1,279	
2020년		134,000	11,988.83	1,607	
2021년	청솔산업(주) (주)동아에프이	133,000	13,614.03	1,811	공동수급 (긴급상황 대비 목적 최소 2개 업체 선정)
2022년		136,000	12,732.43	1,732	
2023년		136,000	14,004.75	1,905	
2024년		<u>135,200</u> (8월기준)	8,015.62 (8월기준)	1,084 (8월기준)	
2025년	일반(총액)입찰을 통한 선정 예정 [공동수급(2~5개 업체)]	-	-	-	11월 입찰공고 예정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생략
11.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